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7일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구역 지정

○ 모아타운 후보지(2개소)

- 지정기간 :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151,939.4㎡) 내 지목 '도로' 한정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고
합 계			151,939.4	
서울특별시	광진구	자양1동 655 일대	73,019.7	모아타운 후보지
	성북구	정릉동 266-108 일대	78,919.7	

※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(5년)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도지역		면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*

* 기타정보-토지거래허가-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- 붙임 1 (지정)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,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
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지정

1. 광진구 자양1동 655 일대

